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의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되어 온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 차주 및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568호, 2021. 12. 7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요

-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운임 종류	- 안전운송운임: 화주(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가 운수사업자(물류기업)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도입 품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시행 기간	'20. 1. 1. ~ '22. 12. 31. (3년간)
위반 시 처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 500만원

II.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568호, 2021. 12. 7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1호)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제2호)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4호)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수정**(별표1)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수정**(별표2)
- 부산신항 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 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임 **운임표 수정**(별표3)
-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적용기간을 **고시의 발령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시행일과 유효기간 변경**(부칙)

3. 관계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

4. 기타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2년 1월 16일 까지

2. 제출방법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30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044-201-4018, 4019, 4020
- 팩스 : 044-201-5601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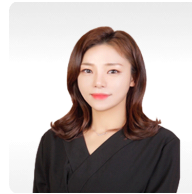
- [붙임1] (개정안)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 개정안
- [붙임2] (고시전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전문
- [붙임3] (행정예고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 [붙임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확정(물류산업과)

| Contact



김성근 관세사

T 070-4353-5152
E skkim2@esein.co.kr



전소연 관세사

T 02-6011-3101
E syjeon1@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